# 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

제정 2008. 11. 11 조례 제1624호 일부개정 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11. 8. 9 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 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 일부개정 2020. 3. 25 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건강"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.
- 2. "건강도시"란 도시의 물리적,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,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.
- 3. "건강증진"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 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
  - 2.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
  - 3.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
  - 4.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
  - 5.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

##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

- 제4조(사업내용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주택, 도로,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한 도시 구축
  - 2.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
  - 3.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 - 4.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관리
  - 5. 시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운영
  - 6. 국내 · 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
- 제5조(계획수립 등) ① 시장은 제4조의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,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  - ②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
  - 2.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3.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
  - 4. 국내 · 외 건강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
  - 5.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
  - 6.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
  - ③ 시장은 시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·변경할 경우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)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·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)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7. 31. 2020. 3. 25〉
- 제8조(교류 및 홍보 협력)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 기구,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·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

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.

### 제3장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

- 제9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건강도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
  - 1.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2.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3.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 ·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.
 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.
 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- 1. 보건소장. 관련국장
  - 2.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
  - 3.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. 〈개정 2010. 11. 25〉
- 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〈개정 2018. 7. 31〉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

#### 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

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시설의 장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 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7. 31〉
  - 1.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
  - 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
  - 4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- 제15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·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6조(수당 및 지원 등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11. 8. 9, 2018. 7. 31, 2020. 3. 25〉
  - ② 위원회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7. 31〉

제17조(시했규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주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⑩ 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중 "해당업무 담당"을 "해당업무 팀장"으로 한다. ⑦ 부터 ⑦ 까지 생략

부칙〈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"를 "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② 부터 ① 까지 생략

부칙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〈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